

동두천시자유수호평화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2. 3. 11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. 3. 11

다. 상정일자 : 제1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6차 본회의 상정, 토론 및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박물관의 휴관일을 매년 1월 1일과 설날, 추석 및 월요일 등으로 정함.
-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정함.
- 박물관의 관람료를 정함.
- 박물관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를 국민, 외국사절단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장애인 등으로 규정함.
-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함.
-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이 제정조례안은 박물관자료의 구입·관리·보존·전시 및 시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하여 2001. 10. 15일 조례 제1102호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직제가 신설되었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, 제12조,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관을 앞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

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, 참고로 2002년도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의 운영비로 1억 2백만 4천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론요지(반대토론 : 간두범 의원)

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자료의 구입·관리·보존·전시로 시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하여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나, 관내 학교 학생의 안보의식 고취 및 동두천시민의 자긍심 제고 등을 위해 일부 미흡한 조항이 있어 수정코자 함.

제6조(무료관람)의 제9항에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추가하고, 따라서 당초 조례안의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, 제7조에 “동두천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는 관람료의 50%를 감면한다”는 관람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당초 조례안의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조례안의 총 조문을 17조로 함.

제15조제3항의 내용중 “높은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”를 “높은 인사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”로 하며 제6항의 내용중 “간사는 관장이 되고”를 “간사는 박물관 소속직원이 되고”로 보완·수정코자 함.

6. 심 사 결 과

“ 수정가결 ”

제 출 안	수 정 안
제1조 ~ 제5조(생 략) 제6조(무료관람)(생 략) 1. ~ 8.(생 략) <u><신 설></u> 9. 기타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<u><신 설></u>	제1조 ~ 제5조(제출안과 같음) 제6조(무료관람)(제출안과 같음) 1. ~ 8.(제출안과 같음) 9.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10. 기타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제7조(관람권) ①관람권은 어른, 청고 년·군인, 어린이 및 어른단체, 청소년· 군인단체, 어린이단체로 구분한 다. ②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 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, 이를 소정의 관람 권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 ③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 람권검인부의 서식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7조(관람료 감면) 동두천시 시민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 는 자는 관람료의 50%를 감면한다. 제8조(관람권) ①관람권은 어른, 청고 년·군인, 어린이 및 어른단체, 청소년· 군인단체, 어린이단체로 구분한 다. ②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 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, 이를 소정의 관람 권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 ③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 람권검인부의 서식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8조(매표 및 수표) ①관람권은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와 제6조제1호 내지 제8호에 의한 무 료관람 대상자를 게시하여야 한다.	제9조(매표 및 수표) ①관람권은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와 제6조제1호 내지 제8호에 의한 무 료관람 대상자를 게시하여야 한다.

제 출 안	수 정 안
제9조(관람의 금지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. 1. 술에 만취한 자 2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6세 이하의 자 3.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4.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	제10조(관람의 금지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. 1. 술에 만취한 자 2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6세 이하의 자 3.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4.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
제10조(행위의 제한) 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1. 흡연을 하는 행위 2.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 (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)을 하는 경우 3.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. 고성, 난무하는 행위 5.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관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.	제11조(행위의 제한) 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1. 흡연을 하는 행위 2.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 (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)을 하는 경우 3.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. 고성, 난무하는 행위 5.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관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.
제11조(변상조치)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품을 파손·오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	제12조(변상조치)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품을 파손·오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제12조(수장품 구입) 관장이 박물관에 수장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. 다만, 5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장이 평가하여 구입할 수 있다.	제13조(수장품 구입) 관장이 박물관에 수장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. 다만, 5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장이 평가하여 구입할 수 있다.

제 출 안	정 안
제13조(수장품의 관리) 수장품은 반드시 자료대상과 자료카드등에 기록 관리 유지한다.	제14조(수장품의 관리) 수장품은 반드시 자료대상과 자료카드등에 기록 관리 유지한다.
제14조(운영위원회) ①박물관에는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, 전시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15조(운영위원회) ①박물관에는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, 전시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으로 한다.	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으로 한다.
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역사 및 문화에 지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은 역사 및 문화에 지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④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	④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⑤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⑤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간사는 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	⑥간사는 박물관 소속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⑦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.	⑦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.
1.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	1.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
2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	2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
3.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	3.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
⑧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	⑧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

제 출 안	수 정 안
<u>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들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제15조(위탁관리) 박물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 <u>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	<u>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들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제16조(위탁관리) 박물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 <u>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